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

[법률 평성7<1995>년제111호, 2016.6.3. 최종개정]

원문 번역문

第一条(目的)

第一条の二(地震防災対策の実施 に関する目標の設定)

災害対策基本法(昭和三十六年 法律第二百二十三号)第十四条 第一項に規定する都道府県防災 会議及び同法第十七条第一項に 規定する都道府県防災会議の協 議会(地震災害(地震動により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진으로 의한 재해로 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 대책 실시에 관한 목표의 설정 및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 획의 작성, 이에 따른 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 특별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지진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의 정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 진방재대책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의 질서 유지와 공공 복지 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의2(지진방재대책 실시에 관한 목표의 설정)

「 재해대책기본법 」 (소화 36<1961>년 법률 제223호) 제14조제1항의 도도부현 방재회의 및 동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도부현 방재회의협의회 [지진재해(지진동에 의하여 직







直接に生ずる被害及びこれに伴 い発生する津波、火事、爆発そ の他の異常な現象により生ずる 被害をいう。以下同じ。)の軽 減を図るため設置されているも のに限る。)は、同法第四十条 に規定する都道府県地域防災計 画及び同法第四十三条に規定す る都道府県相互間地域防災計画 (第三条第二項において「都道 府県地域防災計画等」とい う。)において、想定される地 震災害を明らかにして、当該地 震災害の軽減を図るための地震 防災対策の実施に関する目標 (第三条第二項において「実施 目標」という。)を定めるよう 努めるものとする。

第二条(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 計画の作成等)

접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수반 하여 발생하는 쓰나미, 화재, 폭발, 그 밖의 이상 현상에 의 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는 동법 제40조의 도도부현 지역방재계 획 및 동법 제43조의 도도부현 상호간 지역방재계획(제3조제2 항에서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등"이라 한다)에서 상정되는 지 진재해를 명확히 하여 그 지진 재해를 경감하기 위한 지진방재 대책 실시에 관한 목표(제3조 제2항에서 "실시 목표"라 한다) 를 정하도록 노력한다.

제2조(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획의 작성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인구 및 산업 집적 등의 사회적 조건, 지세 등의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진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지구에 대하여 「재해대책기본법」 제40조의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에 규정된 사항 중 지진방재상 긴급히 정비하여야 할시설 등에 관한 것에 대하여 평성8<1996>년도 이후 연도를첫해로 하는 5개년간의 계획(이하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画」という。)を作成すること ができる。

- 2 都道府県知事は、地震防災緊 急事業五箇年計画を作成しよう 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関 係市町村長の意見を聴かなけれ ばならない。
- 3 都道府県知事は、地震防災緊 急事業五箇年計画を作成しよう 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内 閣総理大臣に協議し、その同意 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 合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は、 同意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関 係行政機関の長の意見を聴かな ければならない。
- 4 前三項の規定は、地震防災緊 急事業五箇年計画を変更する場 合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条(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 計画の内容)

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計画 は、次に掲げる施設等の整備等 であって、当該施設等に関する 主務大臣の定める基準に適合す るものに関する事項について定 めるものとする。

- 一 避難地
- 二避難路
- 三 消防用施設

四 消防活動が困難である区域の 解消に資する道路

-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도도부현 지사는 지진방재긴 급사업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정촌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도도부현 지사는 지진방재긴 급사업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자 할 때에는 미리 내각총리대 신과 협의하고 그 동의를 얻어 야 한다. 이 경우에 내각총리대 신은 동의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은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하다.

제3조(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획의 내용)

- ①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 획은 다음의 시설 등의 정비 등 으로서 그 시설 등에 관하여 주 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다.
- 1. 피난지
- 2. 피난로
- 3. 소방용 시설
- 4. 소방활동이 곤란한 구역 해 소에 기여하는 도로







五 緊急輸送を確保するため必要 な道路、交通管制施設、ヘリポ ート、港湾施設(港湾法(昭和 二十五年法律第二百十八号)第 二条第五項第二号の外郭施設、 同項第三号の係留施設及び同項 第四号の臨港交通施設に限 る。) 又は漁港施設(漁港漁場 整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 三十七号) 第三条第一号イの外 郭施設、同号ロの係留施設及び 同条第二号イの輸送施設に限 る。)

六 共同溝、電線共同溝等の電 線、水管等の公益物件を収容す るための施設

七 医療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 二百五号) 第三十一条に規定す る公的医療機関その他政令で定 める医療機関のうち、地震防災 上改築又は補強を要するもの 八 社会福祉施設のうち、地震防 災上改築又は補強を要するもの 八の二 公立の幼稚園のうち、地 震防災上改築又は補強を要する もの

九公立の小学校、中学校若しく は義務教育学校又は中等教育学 校の前期課程のうち、地震防災 上改築又は補強を要するもの 十 公立の特別支援学校のうち、 地震防災上改築又は補強を要す るもの

5. 긴급우송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교통관제시설. 헬 리포트(helipot), 항만시설[「항 만법_ (소화25<1950>년 법률 제218호) 제2조제5항제2호의 외곽시설, 동항 제3호의 계류시 설 및 동항 제4호의 임항교통 시설에 한한다] 또는 어항시설 [「 어항어장정비법 」 (소화 25<1950>년 법률 제137호) 제3조제1항의가 외곽시설, 동호 나의 계류시설 및 동조 제2호 의가의 우송시설에 한한다] 6. 공동구(共同溝, Utility

Tunnel), 전선공동구 등의 전선 , 수도관 등 공용 시설을 수용 하기 위한 시설

7. 「의료법」(소화23<1948> 년 법률 제205호) 제31조의 공 적의료기관, 기타 정령으로 정 하는 의료기관 중 지진방재상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 8. 사회복지시설 중 지진방재상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 8의2. 공립 유치원 중 지진방재 상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것

9. 공립 소학교, 중학교나 의무 교육기관 또는 중등교육학교 전 기과정 중 지진방재상 보강이 필요한 것

10. 공립 특별지원학교 중 지진 방재상 개축 또는 보강이 필요 한 것







十一 第七号から前号までに掲げ るもののほか、不特定かつ多数 の者が利用する公的建造物のう ち、地震防災上補強を要するも \mathcal{O}

十二 津波により生ずる被害の発 生を防止し、又は軽減すること により円滑な避難を確保するた め必要な海岸法(昭和三十一年 法律第百一号) 第二条第一項に 規定する海岸保全施設又は河川 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百六十 七号)第三条第二項に規定する 河川管理施設

十三 砂防法 (明治三十年法律第 二十九号) 第一条に規定する砂 防設備、森林法 (昭和二十六年 法律第二百四十九号) 第四十一 条に規定する保安施設事業に係 る保安施設、地すべり等防止法 (昭和三十三年法律第三十号) 第二条第三項に規定する地すべ り防止施設、急傾斜地の崩壊に よる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昭和四十四年法律第五十七 号) 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急 傾斜地崩壊防止施設又は土地改 良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百九 十五号) 第二条第二項第一号に 規定する農業用用排水施設であ るため池で、家屋の密集してい る地域の地震防災上必要なもの 十四 地震災害が発生した時(以 下「地震災害時」という。) に

11.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 하는 공적 건조물 중 지진방재 상 보강이 필요한 것

12. 쓰나미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또는 경감하여 원활 한 피난을 위해 필요한 「해안 법 (소화31<1956>년 법률 제101호) 제2조제1항의 해안보 전시설 또는 「하천법」(소화 39<1964>년 법률 제167호) 제3조제2항의 하천관리시설

13. 「사방법(砂防法)」(소화 30<1955>년 법률 제29호) 제 1조의 사방시설, 「삼림법」(소 화26<1951>년 법률 제249호) 제41조의 보안시설사업에 관련 된 보안시설, 「산사태 등 방지 법 | (소화33<1958>년 법률 제30호) 제2호제3항의 산사태 방지시설. 「급경사지 붕괴에 의한 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소화44<1969>년 법률 제57 호) 제2조제2항의 급경사지 붕 괴방지시설 또는 「토지개량 법 | (소화24<1949>년 법률 제195호) 제2조제2항제1호의 농업용 용수시설인 용수지로서 가옥이 밀집한 지역의 지진방재 상 필요한 것







おいて災害応急対策の拠点とし て機能する地域防災拠点施設

十五 地震災害時において迅速かつ的確な被害状況の把握及び住民に対する災害情報の伝達を行うために必要な防災行政無線設備その他の施設又は設備

十六 地震災害時における飲料 水、電源等の確保等により被災 者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 な井戸、貯水槽、水泳プール、 自家発電設備その他の施設又は 設備

十七 地震災害時において必要となる非常用食糧、救助用資機材等の物資の備蓄倉庫

十八 負傷者を一時的に収容及び 保護するための救護設備等地震 災害時における応急的な措置に 必要な設備又は資機材

十九 老朽住宅密集市街地に係る 地震防災対策

- 2 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計画 は、都道府県地域防災計画等に 実施目標が定められているとき は、当該実施目標に即したもの でなければならない。
- 3 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計画 に定める事業のうち、市町村が 実施する事業については、災害 対策基本法第四十二条に規定す る市町村地域防災計画に定めら 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급대책 거점으로서 기능하는 지역방재거점시설

15. 지진재해 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 및 주민에 대한 재해 정보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방재행정무선설비, 그밖의 시설 또는 설비

16. 지진재해 시의 음료수, 전 원 등의 확보로 이재민의 안전 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우 물, 저수탱크, 수영장, 자가발전 설비, 그 밖의 시설 또는 설비

- 17. 지진재해 시에 필요한 비상 용 식량, 구조용 기자재 등의 물자 비축창고
- 18. 부상자를 일시적으로 수용 및 보호하기 위한 보호설비 등 지진재해 시의 응급 조치에 필 요한 설비 또는 기자재
- 19. 노후주택밀집시가지 관련 지진방재대책
- ② 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등에 실시 목표가 정해진 때에 지진 방재응급사업 5개년 계획은 그 실시 목표에 따른 계획이어야 한다.
- ③ 지진방재응급사업 5개년 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중 시정촌이 실시하는 사업은 「재해대책기본법」 제42조의 시정촌 지역방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第四条 (地震防災緊急事業に係る 国の負担又は補助の特例等)

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計画に 基づいて実施される事業のう ち、別表第一に掲げるもの(当 該事業に関する主務大臣の定め 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に限る。 第三項において同じ。) に要す る経費に対する国の負担又は補 助の割合(以下「国の負担割 合」という。)は、当該事業に 関する法令の規定にかかわら ず、同表のとおりとする。この 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事業の うち、別表第二に掲げるもの (都道府県が実施するものを除 き、当該事業に関する主務大臣 の定める基準に適合するものに 限る。) に要する経費に係る都 道府県の負担又は補助の割合 (以下「都道府県の負担割合」 という。)は、同表に掲げる割 合とする。

2 前項に規定する事業に係る経 費に対する他の法令による国の 負担割合が、同項の規定による 国の負担割合を超えるときは、 当該事業に係る経費に対する国 到合については、同項の規定に かかわらず、当該他の法令の定 める割合による。 제4조(지진방재긴급사업에 관련 된 국가의 부담 또는 보조의 특 례 등)

① 지진방재긴급사업 5개년 계 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 중 별 표 제1의 사업(해당 사업에 관 하여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제3항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국 가의 부담 또는 보조의 비율(이 하 "국가의 부담비율"이라 한 다)은 그 사업에 관한 법령 규 정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 따른 다. 이 경우 이들 사업 중 별표 제2에 해당하는 사업(도도부현 이 실시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에 한 한다)에 필요한 경비에 관련된 도도부현의 부담 또는 보조의 비율(이하 "도도부현의 부담비 율"이라 한다)은 동표의 비율로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의 부담비율이 동항 규정에 따른 국가의 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때에 그 사업 관련 경비에 대한 국가의 부담비율 또는 도도부현의 부담비율은 동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다른 법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3 国は、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 年計画に基づいる第一に掲げるののでは、別表でででは、当該のででは、当該のででは、当なのででは、当なののでは、当なののでは、当なののでは、ののでは、できれば、でいるが、ののでは、でいるがでは、でいるがでは、でいるがでは、でいるができないができます。

第五条(地方債についての配慮)

地方公共団体が地震防災緊急事業五箇年計画に基づいて実施する事業に要する経費に充てるため起こす地方債については、法令の範囲内において、資金事情及び当該地方公共団体の財政状況が許す限り、特別の配慮をするものとする。

第六条 (財政上の配慮等)

国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の あるもののほか、地震防災対策 の強化のため必要な財政上及び 金融上の配慮をするものとす る。

第六条の二(公立の小中学校等に ついての耐震診断の実施等)

地方公共団体は、その設置する幼稚園、小学校、中学校、義務

③ 국가는 지진방재긴급사업 5 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사 업 중 별표 제1에 해당하는 사 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교부금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하면 국가가 부담 또는 보 조하게 되는 비율을 참작하여 그 교부금액을 산정한다.

제5조(지방채에 대한 배려)

지방공공단체가 지진방재긴급사 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 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 및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상 황이 허락하는 한 특별히 배려 한다.

제6조(재정상의 배려 등)

국가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 지진방재대책 강 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 및 금융상 배려를 한다.

제6조의2(공립 소·중학교 등에 대한 내진진단 실시 등)

① 지방공공단체는 스스로 설치







教育学校、中等教育学校の前期 課程並びに特別支援学校の幼稚 部、小学部及び中学部の校舎、 屋内運動場及び寄宿舎のうち、 地震に対する安全性に係る建築 基準法 (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 百一号)又はこれに基づく命令 若しくは条例の規定に適合しな い建築物で同法第三条第二項の 規定の適用を受けているものに ついて、耐震診断(文部科学大 臣の定める方法により地震に対 する安全性を評価することをい う。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 じ。)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 い。ただし、耐震診断を行う必 要がないものとして文部科学大 臣の定めるものについては、こ の限りでない。

2 地方公共団体は、前項の耐震診断を行った建築物ごとに、同項の耐震診断の結果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の三(私立の小中学校等についての配慮)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私立の 幼稚園、小学校、中学校、義務 教育学校、中等教育学校の前期 課程並びに特別支援学校の幼稚

하는 유치원, 소학교¹,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중등교육학교 전 기과정,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초등부 및 중등부 교사, 옥내 운동장 및 기숙사 중 지진에 대 한 안전성에 관련된 「건축기준 법 (소화25<1950>년 법률 제201호) 또는 이에 따른 명령 이나 조례 규정에 적합하지 않 은 건축물로서 동법 제3조제2 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에 대하여 내진진단(문부과학대 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진 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로서 문부과학대신이 정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제1항의 내 진진단을 시행한 건축물마다 동 항의 내진진단의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제6조의3(사립 소·중학교 등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립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의무교 육학교, 중등교육학교 전기과정 및 특별지원학교 유치부, 초등

_

¹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함







部、小学部及び中学部の校舎、 屋内運動場及び寄宿舎について、地震防災上必要な整備のため財政上及び金融上の配慮をするものとする。

第七条(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の 設置及び所掌事務)

文部科学省に、地震調査研究推進本部(以下「本部」という。)を置く。

- 2 本部は、次に掲げる事務をつかさどる。
- 一 地震に関する観測、測量、調 査及び研究の推進について総合 的かつ基本的な施策を立案する こと。
- 二 関係行政機関の地震に関する 調査研究予算等の事務の調整を 行うこと。
- 三 地震に関する総合的な調査観測計画を策定すること。

四 地震に関する観測、測量、調査又は研究を行う関係行政機関、大学等の調査結果等を収集し、整理し、及び分析し、並びにこれに基づき総合的な評価を行うこと。

五 前号の規定による評価に基づき、広報を行うこと。

六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 法令の規定により本部に属させ られた事務

3 本部は、前項第一号に掲げる

부 및 중등부의 교사, 옥내운동 장 및 기숙사에 대하여 지진방 재상 필요한 정비를 위하여 재 정상 및 금융상 배려한다.

제7조(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설치 및 소관사무)

- ① 문부과학성에 지진조사연구 추진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를 둔다.
- ② 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하다.
- 1. 지진에 관한 관측, 측량, 조 사 및 연구의 추진에 대하여 종 합적이고 기본적인 시책의 입안
- 2. 관계 행정기관의 지진에 관 한 조사연구예산 등의 사무 조 정
- 3. 지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관측계획의 책정
- 4. 지진에 관한 관측, 측량, 조 사 또는 연구를 하는 관계 행정 기관, 대학 등의 조사결과 등의 수집·정리 및 분석, 이에 따른 종합적인 평가
- 5. 제4호의 평가에 따른 홍보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 외에 법령 규정에 따라 본부에 속하 사무
- ③ 본부는 제2항제1호의 사무







事務を行うに当たっては、中央 防災会議の意見を聴かなければ ならない。

4 本部の事務を行うに当たって は、気象業務法(昭和二十七年) 法律第百六十五号) に基づく業 務が円滑に実施されるよう配慮 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八条 (本部の組織)

本部の長は、地震調査研究推進 本部長(以下「本部長」とい う。)とし、文部科学大臣をも って充てる。

- 2 本部長は、本部の事務を総括 する。
- 3 本部に、地震調査研究推進本 部員を置き、関係行政機関の職 員のうちから文部科学大臣が任 命する。
- 4 本部の庶務は、文部科学省に おいて総括し、及び処理する。 ただし、政令で定めるものにつ いては、文部科学省及び政令で 定める行政機関において共同し て処理する。
- 5 前各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 本部の組織及び運営に関し必要 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第九条(政策委員会)

ら第三号まで、第五号及び第六

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방재회의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본부의 사무를 하는 경우에 는 「기상업무법」 (소화 27<1952>년 법률 제165호)의 업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제8조(본부의 조직)

- ① 본부의 장은 지진조사연구추 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 다)으로 하고 문부과학대신이 담당하다.
- ②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 괄하다.
- ③ 본부에 지진조사연구추진본 부원을 두고 관계 행정기관 직 원 중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 하다.
- ④ 본부의 서무는 문부과학성에 서 총괄 및 처리한다. 다만, 정 령으로 정하는 서무에 대하여는 문부과학성 및 정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서 공동으로 처리한 다.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책위원회)

本部に、第七条第二項第一号か ① 본부에 제7조제2항제1호부 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







号に掲げる事務について調査審 議させるため、政策委員会を置 <

2 政策委員会の委員は、関係行 政機関の職員及び学識経験のあ る者のうちから、文部科学大臣 が任命する。

第十条(地震調査委員会)

本部に、第七条第二項第四号に 掲げる事務を行わせるため、地 震調査委員会を置く。

- 2 地震調査委員会は、前項の事 務に関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 きは、本部長に報告するものと する。
- 3 地震調査委員会の委員は、関 係行政機関の職員及び学識経験 のある者のうちから、文部科学 大臣が任命する。

第十一条(地域に係る地震に関す る情報の収集等)

本部長は、気象庁長官に対し、 第七条第二項第四号に掲げる事 務のうち、地域に係る地震に関 する観測、測量、調査又は研究 を行う関係行政機関、大学等の 調査結果等の収集を行うことを 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2 気象庁長官は、前項の規定に よる要請を受けて収集を行った ときは、その成果を本部長に報 告するものとする。

무에 대하여 조사·심사하도록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 정기관의 직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

제10조(지진조사위원회)

- ① 본부에 제7조제2항제4호의 사무를 하도록 지진조사위원회 를 둔다.
- ② 지진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다.
- ③ 지진조사위원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직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

제11조(지역 관련 지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

- ① 본부장은 기상청 장관에게 제7조제2항제4호의 사무 중 지 역 관련 지진에 관한 관측, 측 량, 조사 또는 연구를 하는 관 계 행정기관. 대학 등의 조사결 과 등을 수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기상청 장관은 제1항 규정 에 따른 요청을 받아 수집을 한 때에는 그 성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3 気象庁及び管区気象台(沖縄 気象台を含む。)は、第一項の 事務を行うに当たっては、地域 地震情報センターという名称を 用いるものとする。

第十二条 (関係行政機関等の協力)

本部長は、その所掌事務に関し、関係行政機関の長その他の関係者に対し、資料の提供、意見の開陳その他の必要な協力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十三条 (調査研究の推進等)

国は、地震に関する観測、測量、調査及び研究のための体制の整備に努めるとともに、地震防災に関する科学技術の振興を図るため必要な研究開発を推進し、その成果の普及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は、地震に関する観測、測量、調査及び研究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予算等の確保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3 国は、地方公共団体が地震に 関する観測、測量、調査若しく は研究を行い、又は研究者等を 養成する場合には、必要な技術 上及び財政上の援助に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③ 기상청 및 관할 기상대(오키나와 기상대를 포함한다)는 제 1항의 사무를 하는 경우에 지역지진정보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력)

본부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연구의 추진 등)

- ① 국가는 지진에 관한 관측, 측량,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체 제 정비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 에 지진방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진에 관한 관측, 측량, 조사 및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등의 확보 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진 에 관한 관측, 측량, 조사나 연 구를 하거나 연구자 등을 양성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상 및 재정상 원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十四条(想定される地震災害等 の周知)

都道府県は、当該都道府県にお いて想定される地震災害の軽減 を図るため、当該地域における 地震動の大きさ、津波により浸 水する範囲及びその水深並びに 地震災害の程度に関する事項に ついて、これらを記載した印刷 物の配布その他の必要な措置を 講ずることにより、住民に周知し 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 ない。

2 市町村は、当該市町村におい て想定される地震災害の軽減を 図るため、当該地域における地 震動の大きさ、津波により浸水 する範囲及びその水深並びに地 震災害の程度に関する事項並び に地震災害に関する情報。予報 及び警報の伝達方法、避難場所 その他の地震が発生した時の円 滑な避難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 な事項について、これらを記載 した印刷物の配布その他の必要 な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住 民に周知させるように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附則

제14조(상정되는 지진재해 등의 주지)

① 도도부현은 해당 지역에서 예상되는 지진재해의 경감을 위 하여 지역의 지진동의 크기. 쓰 나미에 의하여 침수되는 범위와 그 수심 및 지진재해 정도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기재한 인쇄물의 배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에게 주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정촌은 해당 지역에서 예 상되는 지진재해의 경감을 위하 여 지역의 지진동의 크기, 쓰나 미에 의하여 침수되는 범위와 그 수심 및 지진재해 정도에 관 한 사항 및 지진재해에 관한 정 보, 예보 및 경보의 전달방법, 피난장소, 그 밖에 지진 발생 시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기재한 인쇄물의 배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민에게 주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